

예 산 총 칙

2019년도 본 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64,291,919	16,928,758
일반회계	373,458,561	11,203,757
특별회계	185,019,741	5,550,592
기타특별회계	185,019,741	5,550,592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882,514	26,475
주차장특별회계	350,000	10,5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684,193	80,52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32,345,086	3,970,353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010,000	30,300
치수사업특별회계	290,948	8,728
원자력발전지역지원시설세특별회계	47,457,000	1,423,710
기금	5,813,617	174,409
재난안전기금	1,483,431	44,503
농어업발전기금	2,944,070	88,322
공무원주거안정기금	534,466	16,034
자활기금	751,000	22,530
식품진흥기금	100,650	3,02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045,338천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는 1,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수 있다.